

[별표 6] 수시 보고 사항(제22조제4항 관련) <개정 2022. 5. 3.>

1.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
가. 감사보고서의 철회 및 재발행(사유 및 발생원인을 포함한다)

나. 독립성 위반에 관한 사항

다.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감사인으로 신규등록, 등록철회, 등록취소 등 변동에 관한 사항

2. 회계법인의 경영일반에 해당하는 사항

가. 상호의 변경

나. 정관의 변경(단, 사원·이사의 변경 및 다른 수시보고사항으로 인해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다.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선임과 해임

라. 삭제 <2022. 5. 3.>

마.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, 분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

바.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

사. 외국법인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

아.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항(특수관계자 추가 및 해제 등)

3.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

가. 외국감독기구 등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

나.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. 다만, 별표1 제2호는 제외한다.

- 다.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국 감독기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
- 라. 국내외 행정·사법기관 및 감독기관(금융위원회는 제외한다) 등으로부터 자기자본 10%(단, 자기자본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) 이상의 벌금,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
- 마. 회계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%(단, 자기자본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) 이상인 경우
- 바.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경영분쟁이 발생한 경우
- 사. 소속 이사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
- 아. 주요 출자사원(지분이 5%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자. 이사 등 임직원이 횡령, 위조, 뇌물, 공무집행방해, 위증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감사, 증권, 세무, 은행, 소비자보호, 보험 등과 관련이 있는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